2020년도 제1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0. 7. 6.(월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권헌영, 박정인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1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분과위원
3. 안건상정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660건(안건번호 제2020-61873 호~6410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61873호~61914호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 자가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 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 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 권고를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16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27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1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4쪽의 OSP명, 5쪽의 사이트명, 게시자명, 게시물 제목, 6쪽의 카페명, 8쪽의 사이트명, 출판사명, 9쪽의 게시물 제목, 저작물명, 10쪽의 민원인 신고 내용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 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OSP명, 사이트명, 게시자명, 게시물 제목, 카페명, 출판사명, 저작물명, 민원인 신고 내용은 비식

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0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유니버설픽쳐스', '월트디즈니컴퍼니', '(주)NEW', '소니픽쳐스', '세제이이앤엠(주)', '이십세기폭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주)이수씨앤이', '넷플릭스', '리틀빅픽쳐스', '마블스튜디오',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어도비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TV조선', 'tvN', '채널A'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중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바람.
 - A 위원, B 위원, C 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 시한 4,66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61873호~64108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음.

안건번호 제2020-61873호~6191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만화 불법복제물을 jpg 파일로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각 30 ~ 14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873호는 만화 '☆☆☆☆☆☆☆☆'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 판매가는 4,320원이고, 출판사는 '★★★★★'임.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이외에도 나머지 41개 안건에 대하여 OSP명, 불법복제물명, 게시자명, 웹하드 판매가, 정품 판매가를 해당 표와 같이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61873호~6191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C 위원: 게시자는 모두 영리 목적으로 만화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1873호~6191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915호~6410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그중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956호는 2020. 6. 17. 개봉한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안임. 수입·배급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이고, 2020. 7. 3. 기준 누적 관객 수는 307,181명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965호는 2020. 4. 29. 개봉한 영화 '트롤: 월드 투어' 더빙판을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수입·배급사는 '유니버설픽쳐스'이고, 2020. 7. 3. 누적 관객 수는 151,796명임. 이 영화는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VOD 이용 가격은 22,000원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2000호는 2020. 5. 27. 개봉한 영화 '언더워터'를 웹하드에서 1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6. 18.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0. 7. 3. 기준 누적 관객 수는 109,920명임. 수입·배급사는 '월트디

즈니컴퍼니코리아'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srt 자막 파일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2071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영화 '콜 오브 와일드'를 제공한 사안임. 이 영화는 미국에서 2020. 2. 21. 개봉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20. 5. 14. 개봉하였고, 2020. 6. 4.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수입·배급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임. '○○○○○○○○'라는 네이버 밴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밴드 멤버 수는 1,397명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2146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영화 '블러드샷'을 제공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5. 21. 극장과 VOD 동시 개봉하였고, 수입·배급사는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임. '●●●'라는 네이버 밴드에서 제공 중인데, 이밴드 멤버 수는 5명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2020. 6. 3. 개최된전체위원회에서 개방형 밴드에서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에 대해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제도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회원 수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음. 이러한 심의 기준에따라 해당 안건은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2327호는 2020. 6. 4. 개봉한 영화 '침입자'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99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6. 24.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0. 7. 3. 기준 누적 관객 수 530,928명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2020-62713호는 가수 'Ariana Grande'와 'Justin Bieber'가 실연한 음원 'Stuck with U'를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음원 포함 200곡 이용

가능한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음원 정보로는 가수 'Dua Lipa'가 실연한 곡 'Physical' 등이 있음. 음원 'Stuck with U'는 2020. 5. 7. 발매된 곡으로, 가수 'Ariana Grande'와 'Justin Bieber'의 자선 싱글 앨범에 수록되어 있음. 코로나 19 범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봉쇄 생활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앨범 수익금 모두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다고 함. 이 음원은 2020. 5. 23.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2747호는 2019. 2. 8. 출시한 게임 '갓이터 3'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84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게임물의 제작·배급사는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이고, 정품 판매가는 54,800원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2794호는 2019. 11.경 릴리즈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Adobe Illustrator CC' 2020 버전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2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이 소프트웨어 권리자는 '어도비시스템즈'인데 권리자는 공식홈페이지에서 7일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음.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정품 라이선스 이용료는 한 달에 24,000원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동인증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2988호는 2020. 5. 1. 우리나라 방송사 'tvN'에서 방영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 5' 4회를 192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4회는 2020. 5. 22. 방영되었음. 참고로 2020. 6. 26. 방영된 9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기준 12.2%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4037호는 2019. 1. 10. 시리즈물 발간 시작한 만화 '현실의 여친은 필요 없어!' 1~7화 압축 파일을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총 4권 미완결

이며, 단권 판매가는 4,500원임.

심의위원들께서는 개인 PC로 심의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의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 건번호 제2020-61915호~6410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B 위원,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61915호~6410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1915호~6410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1873호~6410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13.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권헌영

위원 박정인